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1011
----------	------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9조 제1항)
-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회만 부과 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안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 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
(안 제9조 제3항)
- 라.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 (안 제11조)
- 마. 기타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
(안 제14조 내지 제17조)
- 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5조)
- 사.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2002. 2. 4)
- 2) 환경부예규 제232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개정
(2003. 7.28)
- 3) 환경부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2003. 9. 3)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 행정구역 안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기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4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장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제9조(신고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적발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물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및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내용의 보완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의 처리 등) 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한다.

④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처분 등)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행위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8조(주민 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종로구 주민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금 획득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자가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법에 의한 고발의무가 있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 제7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단위 : 만원)

과 대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영 제8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소형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 제외)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 장 면 적 이 33 제 곱 미 터 이 상 165 제 곱 미 터 미 만 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축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 장 면 적 이 33 제 곱 미 터 이 상 165 제 곱 미 터 미 만 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단위 : 만원)

과 목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50	100	
나. 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주)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80	90	100	
4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5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포장공간비를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할 때	150	200	300	
(2)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인 때	200	250	300	
(3)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250	300	300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 더 포장한 때	100	150	300	
(2)기준보다 2회 더 포장한 때	150	200	300	
(3)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00	250	3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라.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마.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룸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의 포장용기재 사용제품을 진열·판매하는 중에 의한 포장용기 재사용 협조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바.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아.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무)	
6.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200	300	300	
7.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8.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9.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활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10.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1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12.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 제3항)	50	70	100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 제 조 제 항의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 조의 규정에
년 월 일까지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종로구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제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종로구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과기준		⑤납부통지 서 번호	
	⑥고지받은 일 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 태 료 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재 호

수 신 :

발 신 : 종로구청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⑥과 태 료 금 액	
	⑤부과기간		⑦이 의 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제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계좌번호 : 은행

(통장사본 첨부)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 락 처 :

(위반행위)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③ 위반행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

종로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제 호

위반자 성명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 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

신고번호 : 제 호

(위반자 인적사항)

-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③ 위반행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감액)

년 월 일

종로구청장

(절 취 선)

사실확인 회보서

신고번호 : 제 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③ 기타사항 : ()

년 월 일

확인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성 명 ③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발부일자	:		위반법률		
			법 제 조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종)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발부일자	:		위반법률		
			법 제 조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 로 구 청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종)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 납부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	
세입자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종로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종)

(정)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증(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종)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종로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종)

[별지 제11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 ① 연 계 : 년 월 일, 시 분
- ② 어 디 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 ③ 위반종별 :
- ④ 상황설명 :
-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①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외견제출기한	.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외견제출기한	.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 로 구 청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 납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새입자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종로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증					
발행번호	계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종로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